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2차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

1 공고개요

- 공 고 명 :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2차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
 - 목 적 : 투자진흥지구의 기업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
 - 신청 및 접수 기간 : 공고일 ~ 2025.10.31.
 - 지원대상 :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(입주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)
 - 지원내용 : 입지보조금, 설비투자 보조금, 이전 보조금, 고용 보조금, 교육 훈련 보조금, 컨설팅 보조금
 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jhs2@gicon.or.kr) *접수 후 확인 필수
- * 모든 구비서류는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,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증빙이 확인가능해야함
- * 기한 내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검토 가능하며 임의로 추가 및 보완 불가함

1. 지원대상

-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
입주한 기업
- 투자진흥지구 입주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기업
-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

*투자진흥지구 권역 안내

권역	위치
국립아시아문화전당	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일원
광주CGI센터	광주CGI센터, 광주실감콘텐츠큐브
아킴보호텔	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23-2

※ (별첨) 투자진흥지구 권역지도 참고

2. 지원조건

-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 - 1)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되며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
 - 상시고용인원은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
 - 2)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: 투자금액 30억 원 이상
 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), 국제 회의업, 유원 시설업 또는 관광 편의 시설업에 대한 투자
 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한 투자
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(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한 투자
 -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
-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본사, 지사 구분 없이 적용됨
 - 별도의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독립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
 - 개별 법인으로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
-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일부터 5년(이하“사업 이행기간”)이상 투자 사업장의 사업을 경영해야 함
- 사업이행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 상시고용 인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(단,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3년)
 - ※ 보조금 교부 신청시 ‘이행보증보험증권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,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 환수 됨

※지원조건 관련 세부기준

항 목	세 부 기 준			
투 자 금 액	· 투자금액 인정기준		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입 지</td> <td>투자진흥지구 내 토지 분양 및 매입비용</td> </tr> <tr> <td>설 비 투 자</td> <td> ① 건축비 : 토지 분양 및 매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만 해당 - 비주거용 건물(공장·상가·사무실 등)의 건축비 - 비주거용 건물매입 비용 포함 * 폐건물 매입비용, 폐건물 내의 기계장비 매입 및 철거비용 불인정 * 증설인 경우는 증설된 부분만 해당 - 기타 입주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설비투자비 * 소모품, 미술품, 장식품 등은 불인정 ② 토목구축물 설치비 : 도로, 상하수도, 전기통신 공사비 - 비주거용 건물(공장·상가·사무실 등)의 기반시설설치비 * 세금, 측량수수료, 등기수수료 등 일반수수료, 소모성 비품비 불인정 ③ 기계·장비 등 구입비 : 각종 기자재, SW구입비 등 </td> </tr> </table>	입 지	투자진흥지구 내 토지 분양 및 매입비용	설 비 투 자
입 지	투자진흥지구 내 토지 분양 및 매입비용			
설 비 투 자	① 건축비 : 토지 분양 및 매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만 해당 - 비주거용 건물(공장·상가·사무실 등)의 건축비 - 비주거용 건물매입 비용 포함 * 폐건물 매입비용, 폐건물 내의 기계장비 매입 및 철거비용 불인정 * 증설인 경우는 증설된 부분만 해당 - 기타 입주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설비투자비 * 소모품, 미술품, 장식품 등은 불인정 ② 토목구축물 설치비 : 도로, 상하수도, 전기통신 공사비 - 비주거용 건물(공장·상가·사무실 등)의 기반시설설치비 * 세금, 측량수수료, 등기수수료 등 일반수수료, 소모성 비품비 불인정 ③ 기계·장비 등 구입비 : 각종 기자재, SW구입비 등			
상시고용인원	· 상시고용인원 인정기준		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고 용 주 체</td> <td> - 별도의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독립된 사업장 - 개별 법인으로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장 -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인정 </td> </tr> <tr> <td>인 정 범 위</td> <td> -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로 증명 가능한 6개월간 평균인원(파견근로자 포함)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증빙 필수 -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 제외 - 타 인건비 보조사업 인건비 보조를 받는 인원도 상시고용인원으로 인정되나 고용보조금 대상으로는 불인정 </td> </tr> </table>	고 용 주 체	- 별도의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독립된 사업장 - 개별 법인으로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장 -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인정	인 정 범 위
고 용 주 체	- 별도의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독립된 사업장 - 개별 법인으로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장 -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인정			
인 정 범 위	-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로 증명 가능한 6개월간 평균인원(파견근로자 포함)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증빙 필수 -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 제외 - 타 인건비 보조사업 인건비 보조를 받는 인원도 상시고용인원으로 인정되나 고용보조금 대상으로는 불인정			

3. 지원 제외 대상

- 국세·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- 기업이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- 투자진흥지구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- 다른 법률과 조례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

1. 지원규모

- 기업 당 지원금 총액은 최대 50억 원 한도 내 지원(수도권 소재 이전기업*의 경우 최대 120억 원 이내 지원)
- 당해년도 사업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
*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 9조에 해당하는 기업

제9조(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)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,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
 2. 기존사업장(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
-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,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1.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, 공장,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
 2.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
 3.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
 4. 투자금액이 10억 원(대기업은 300억 원) 이상일 것
 5.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및 매각(임차사업장은 폐쇄)하되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

2. 지원내용

- 보조금 항목별 지원내용

구 분	지 원 조 건	지 원 내 용
입 지 보 조 금	투자진흥지구 내 토지 분양 및 매입	분양가(매입가) 20%범위 내 지원, 국가재정 자금이 지원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은 분양가(매입가) 45% 범위 내 지원 *투자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
이 전 보 조 금	본사·공장 또는 연구소를 투자진흥지구로 이전	실질적 근무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지원(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)
설 비 투 자 보 조 금	투자진흥지구 내 공장 등을 이전 및 신증설하기 위한 설비투자 (건축비, 토목구축물 설치비, 기계·장비 구입비 등)	설비투자액의 17% 범위 내 지원 *투자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
고 용 보 조 금	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한 경우 (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증빙 필수)	10명 초과하는 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내 100만원 이하 지원
교 육 훈 련 보 조 금	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(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필수)	10명 초과하는 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 100만원 이하 지원
컨 설 팅 보 조 금	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기 위해 건설팅을 실시한 경우	총 투자액의 5% 이내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

※ 보조금 항목별 세부기준 및 지원율은 사업안내서 참조

4

접수방법

- 신청서류 : 사업안내서 참조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jhs2@gicon.or.kr) *접수 후 확인 필수
- 접수처 : 전략기획TF팀 신주화 선임
- 연락처 : 062-610-2986

5

사업절차 및 관리

- 가. 적정성 검토 : 회계법인, 노무법인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투자금액 검증 및 적정성 검토,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계획, 입지·설비, 고용현황 등 점검
- 나. 보조금 지급 심의·의결 : 투자인정 금액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등을 투자진흥지구 발전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금 지급 의결
- 다. 추진절차

모집·접수	적정성 검토	심의·의결	보조금 지급	사후관리
· 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 및 접수	· 투자금액 검증 및 적정성 검토 · 현장실사 등	· 투자진흥지구 발전위원회	·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지급 (진흥원→기업)	· 사업이행기간 중 의무사항 관리 · 관리조치 (완료/환수 등)
· 신청/접수 (기업→진흥원)	· 검증 결과 제출 (진흥원→市)	· 결정통보 (市→진흥원→기업)	·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(기업→진흥원)	· 매년 2회 실사 (상/하반기)
공고일 ~10.31.(접수)	접수 후 4주 내외	보고서 송부 후 4주 내외	심의 의결 후 2주 내외	반기별 실시

※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절차는 변동 가능

6

기타 사항

가. 공고 및 접수, 선정 후 주의 사항 등

- 1)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2) 사업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 있음

나. 환수 관련

- 1) 교부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, 사업이행기간 내 의무기준 미준수 시 환수기준에 따라 지원금 환수(직접 환수 및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등)
- 2) 환수기준은 사업안내서의 보조금 환수기준 참조

다. 문의 : 전략기획TF팀 신주화 선임(062-610-2986)